

『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』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0년 11월 17 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- 농기계 수리 보조금 지원은 관내 지역 농업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모든 군·구에 형평에 맞게 지원되어야 하는 조례임에도
- 기존에 강화·옹진군에서 조례를 운영하여 자체적으로 보조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어 지원 제외대상에 포함한 것을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관내 모든 농업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함은 물론 군·구에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비 지원 조항 신설.
 -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강화군·옹진군에는 동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(안 제8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7일(화)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(참조 : 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33, 팩스 032-440-8765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주 소: ○성 명: ○연락처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참고자료

-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제8조(사업비지원)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강화군·옹진군에는 동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〈<u>신 설</u>〉	<u>제8조(사업비지원)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강화군·옹진군에는 동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u>
<u>제8조(사무의 위임) (생략)</u>	<u>제9조(사무의 위임) (현행 제8조와 같음)</u>

관련법령 발췌사항

관계법령	☐ 농업기계화 촉진법 ○ 제3조(농업기계화 촉진 의무) ○ 제4조(자금 지원) ☐ 강화군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☐ 용진군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“세부내용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사항 없음”

관련법령 발췌사항

□ 농업기계화 촉진법

제3조 (농업기계화 촉진의무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4조 (자금 지원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에게 농업기계의 개발, 생산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□ 강화군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

개정 2000.12. 2 조례 제1647호

개정 2003. 4.17 조례 제1747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농기계 이용을 제고를 위하여 강화군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수리센터를 설치하고 부속품대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수리장비 및 시설) 농기계 수리를 위하여 수리장비 및 공구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수리 차량을 운영한다.

제3조(기능) ①농기계수리센터는 부속품대체 정비 기타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 현장농민 교육을 병행 실시한다.

②농기계수리는 입고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순회 또는 방문수리도 실시 할 수 있다. <개정 2000. 12. 2>

③순회수리는 도서지역·오지마을 등 수리점이 없는 지역에 한하여 실시한다. <개정 2000.12.2>

④<삭제 2000. 12. 2>

제4조(관리) ①농기계수리센터의 관리운영은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이 한다.

②농기계수리센터 수리요원은 농기계담당지도사, 농기계교관, 농기계기사, 운전기사로 편성한다.

제5조(부품대금등) ①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수리할 경우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에 대하여 구입원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부품대금을 징수한다. 다만,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리비 지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 경우 제2항의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.<개정 2003.4.17>

②강화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지정한 농기계수리점에서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에 한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수리비를 지원 할 수 있다. 다만, 농가당 지원대상 농기계는 5기중에 한하며 지원액은 연간 3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 <신설 2003. 4. 17>

③군수가 지정한 농기계 지정수리점에서 농기계를 수리하였을 경우에는 수리대금을 지불한후 (별지 제1호)서식에 의한 농업기계수리 확인서를 발급받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<개정 2003. 4. 17>

④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가에서 제출한 수리확인서를 검토확인후 제1항에 의한 부품대금을 청구일로부터 15일이내에 해당농가에 지급한다. <개정 2000. 12. 2>
<개정 2003. 4. 17>

제6조(농기계수리점지정) ①군수는 농기계수리여건(수리기사, 점포, 수리장비 등)을 갖추고 농기계 수리점 지정을 신청할 경우 농기계수리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03. 4. 17>

②농기계수리점으로 지정된 자는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에 따른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.

③농기계수리점으로 지정된자는 수리확인서를 사실대로 발급하여야 하며 수리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되면 농기계수리점 지정을 취소하고 군수는 부정으로 지급된 금액을 해당농가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. <신설 2000. 12. 2>

제7조(수리확인서발급) 농기계수리점으로 지정된자는 수리한후 수리확인서를 2부작성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농가에 발급하여야 한다. <신설 2000. 12. 2> <개정 2003. 4. 17>

제8조(망실 또는 훼손) 장비 및 공구가 관리자의 부주의로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. <개정 2000. 12. 2>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00. 12. 2>

부 칙 (1999.11.20 조례 제1614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0.12. 2 조례 제1647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3. 4.17 조례 제1747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**용진군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**

제정 1973. 6.20 조례 제 251호

개정 1977. 2.23 조례 제 416호

개정 1980. 7. 7 조례 제 566호

개정 1982. 5.31 조례 제 651호

개정 1984. 2. 1 조례 제 819호

개정 1986. 3.28 조례 제 926호

개정 1999. 1.15 조례 제1496호

(전문개정) 2007.03.06 조례 제1795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농업기계화촉진법」 제3조에 의거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농기계 이용을 제고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수리센터를 설치하고 부속품대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수리장비 및 시설) 농기계 수리를 위하여 농기계 수리장비 및 공구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수리 차량을 운영한다.

제3조(기능) ①농기계수리센터는 부속품대체 정비 기타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 는 현장농민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한다.

②농기계수리는 입고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순회 또는 방문수리도 할 수 있다.

제4조(관리) ①농기계수리센터의 관리운영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.

②농기계수리센터 수리요원은 농기계담당지도사, 농기계교관, 운전기사로 편성한다.

제5조(부품대금 등) ①농기계수리센터에서 농기계를 수리할 경우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에 대하여 구입원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부품대금을 징수한다. 다만,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리비 지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 경우 제2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한다.

②용진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지정한 농기계수리점에서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에 한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농가당 지원대상 농기계는 5기중에 한하며, 지원액은 연간 3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1. 트랙터, 콤파인 : 100,000원 이내

2. 경운기, 관리기 및 기타 : 50,000원 이내

제6조(지급방법) ①군수가 지정한 농기계지정수리점에서 농기계를 수리하였을 경우에는 수리대금을 지불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농업기계 수리확인서를 발급받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가에서 제출한 수리확인서를 검토 확인 후 제1항에 의한 부품대금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농가에 지급한다.

제7조(농기계수리점 지정) ①농기계수리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농기계수리점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군수는 신청서 및 수리여건(사업자등록증, 수리기사, 점포, 수리장비 등)을 검토 후 농기계수리점으로 지

정할 수 있다.

②농기계수리점으로 지정된 자는 농기계수리센터에서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에 따른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.

③농기계수리점으로 지정된 자는 수리확인서를 사실대로 발급하여야 하며 수리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되면 농기계수리점 지정을 취소하고 군수는 부정으로 지급된 금액을 해당농가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.

제8조(수리확인서 발급) 농기계수리점으로 지정된 자는 수리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리확인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농가에 발급하여야 한다.

제9조(망실 또는 훼손) 장비 및 공구가 관리자의 부주의로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 (1973. 6.20 조례 제251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77. 2. 23 조례 제416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80. 7. 7 조례 제566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82. 5. 31 조례 제651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84. 2. 1 조례 제819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86. 3. 28 조례 제926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99. 1. 15 조례 제1496호)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적용일) 이 조례는 1998년 10월 2일부터 적용한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7. 3. 16 조례 제1795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